



인 후 교 육 통 신

발 행 일 : 2024. 6. 12.

발행기관 : 전주인후초등학교

홈페이지 : <https://school.jbedu.kr/inhu>

☎ 교무실 063) 244-8983

출결 관리 안내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477호]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항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출석으로 처리)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선수 출전(20일까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4)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학부모 의견서 제출)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장이 인정한 경우
- 6)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중조부모, 외중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중조부모, 외외중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사망 시- 장례확인서 제출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처리, 결석제 제출)

- 1) 3일 이상 결석이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2일 이내의 결석이면 결석신고서만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외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을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마. 기타 결석(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 바. 장기 결석
- 같은 종류로 연속 5일이상 결석 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기록 (추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각·조퇴·결과

- 가. 지각: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다.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2. 교외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 3) 교외체험학습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사전 신청 연 15일 신청 가능(연속 신청 가능 일수 : 10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 이상일 때 신청 가능. 현재 '경계'단계이므로 가정학습 신청은 불가함.
◇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아동이 통화함을 원칙으로 함.
◇ 절차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사전 제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정원의 약자관리

가. 정원의 학적 관리의 대상

- 1)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나. 정원의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4. 코로나19로 대응을 위한 출결 변경사항

대상
° 확진자(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차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유증상자 : 질병 결석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024. 6. 12.

전 주 인 후 초 등 학 교 장